접 수	의안과 - (20 . . . :)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청원안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1. 청원소개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20 년 1 월 12 일

청 원 인

성 명 : 이정찬

주 소 :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 이정찬 (인) 외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 원 인	주소 :
	성명 : 이정찬
건 명	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청원안
소개 년 월일	2020년 1 월 12 일

소개의견

청원인 이정찬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.
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<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청원안>입니다.

대한민국은 26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 노동자의 나라입니다.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(노동)을 하게 됩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노동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(노동),을 할 수 있는 나이, 최저임금, 최저시금 등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구체적인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, 사생활 자유 등 이러한 구체적인 노동교육은 가르치지 않습니다.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.

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.

<추가>
제17조의7(노동교육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노동인권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또는 실시하여야한다.

소 개 의 원 인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대한민국의 노동자 수는 대략 2600만 명을 넘어섭니다.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0만 명 정도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가 650만 명 정도가 됩니다. 이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나라입니다.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을 하는 방법, 파업할 때 협상하는 방법 등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. 독일 같은 경우는 중학생만 돼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. 독일도 노동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. 노동자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,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안 가르친다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불리해집니다. 이 같은 생각 때문에 이런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서울시교육청의'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'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5.9%였습니다.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총 865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교 학생 중 절반에 달하는 47.8%는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가장 많은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 57%가 초과수당과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문제를 꼽았습니다. 21.2%는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을 많이 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. 손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17.9%였습니다. 노동이권 침해를 당했을 때 35.3%는 그냥 참고 일했으며, 26.4%는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60% 이상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생산 활동이 적어질 것입니다.

헌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'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'고 하고 있습니다. 청소년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근로의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그에 맞게 법이 개정되어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.

2. 주요골자

현행 교육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<추가>
제17조의7(노동교육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노동인권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또는 실시하여야 한다.

<신구문 대조표>

현 행	개정안
제17조의2(남녀평등교육의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	제17조의2(남녀평등교육의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·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·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·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·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.	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.
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·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·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7조의3(학습윤리의 확립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·연구·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	제17조의3(학습윤리의 확립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·연구·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제17조의4(건전한 성의식 함양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(性)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	제17조의4(건전한 성의식 함양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(性)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·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·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	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	제17조의6(평화적 통일 지향) 국가 및 지방자치

제17조의6(평화적 통일 지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	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제17조의7(노동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노동인권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또는 실시하여야 한다.

3. 기대효과

이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창시절에 노동인권교육을 받게하여 성인이 되어서 노동을 할 때 불이익이 없고 노동인권 침해 없이 원활하게 노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청원인 성명 : 이정찬
청원인 주소 :
청원인 전화번호 :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연 번	성 명	주 소	날 인	비 고

【별첨 2】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연 번	의 원 명	날 인	소 속 정 당	소속위원회	선 거 구	비 고

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

1.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, 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서 각각 3부씩(이중 2부는 사본)이며
,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. 청원제출용지

①「제목」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.

②「청원인 주소, 전화번호, 성명」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「성명」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「날인」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[예] 성명 : ○○주식회사 …… 대표이사 홍 길 동 (인) 외 24인(법인)

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

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3. 청원소개의견서

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.

②「소개의견」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.

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
4. 청원서

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, 전화,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,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, 취지,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
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.

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(A4)규격(가로210mm, 세로297mm)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